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호주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50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523

03. 비관세장벽 현황_ 527

04. 수출 애로사항_ 538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541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e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기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¹⁾²⁾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3년 호주 식품 시장규모는 839억 달러(한화 약 123조 3,330억 원)로 전년 대비 5.0% 증가 했으며, 신선식품이 가공식품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81억 달러(한화 약 70조 7,07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57.3%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규모 178억 달러(한화 약 26조 1,660억 원)로 가장 높은 21.2%의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낙농품(14.5%), 채소류 (10.6%), 과일 및 견과류(8.6%)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358억 달러(한화 약 44조 9,330억 원)로 집계되며,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 얼류의 비중이 높음
 - * 스낵류가 규모 166억 달러(한화 약 24조 4,020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9.8%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0.8%), 편의식품(4.4%), 펫푸드(3.6%) 순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5.0	66.0	75.8	79.9	83.9	100.0	5.0
신선식품	36.8	37.4	43.2	45.6	48.1	57.3	5.5
- 육류	13.4	13.7	15.7	16.7	17.8	21.2	6.6
- 낙농품	9.4	9.5	11.0	11.6	12.2	14.5	5.2
- 채소류	6.8	6.9	8.0	8.5	8.9	10.6	4.7
- 과일 및 견과류	5.6	5.7	6.6	6.9	7.2	8.6	4.3
- 유지류	1.6	1.6	1.9	1.9	2.0	2.4	5.3
가공식품	28.2	28.6	32.6	34.3	35.8	42.7	4.4
- 스낵류	12.8	13.0	14.9	15.8	16.6	19.8	5.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3	7.3	8.5	8.8	9.1	10.8	3.4
- 편의식품	2.8	2.9	3.3	3.6	3.7	4.4	2.8
- 펫푸드	2.6	2.7	2.8	2.8	3.0	3.6	7.1
- 소스 및 향신료	1.5	1.5	1.7	1.8	1.9	2.3	5.6
- 스프레드 및 당류	0.8	0.8	0.9	1.0	1.0	1.2	0.0
- 영유아용 식품	0.4	0.4	0.5	0.5	0.5	0.6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2,6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77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2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 인구 수는 약 1,330만 명(약 50.2%), 남성 인구 수는 약 1,310만 명(약 49.4%)으로 남녀 성비가 교등한 편임
- 2023년 가구 수는 67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3만 2,000달러 (한화 약 470 만 원)로 집계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전체의 1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수준임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3,173.8달러(한화 약 467만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 했으며, 신선식품이 가공식품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1,820.0달러(한화 약 268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57.3%를 차지함
 - * 육류의 비중이 21.3%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 낙농품(14.6%), 채소류(10.6%)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1,353.8달러(한화 약 199만 원)로 식품 관련 전체 지출의 42.7%에 해당함
 - * 스낵류의 비중이 19.7%로 가장 크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0.9%), 스낵류(편의식품)(4.5%) 순임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560.3	2,558.9	2,916.4	3,051.9	3,173.8	100.0	4.0
신선식품	1,449.6	1,449.8	1,661.4	1,744.0	1,820.0	57.3	4.4
- 육류	529.0	531.9	604.9	639.4	674.9	21.3	5.6
- 낙농품	369.1	367.9	423.1	444.5	462.3	14.6	4.0
- 채소류	267.8	267.0	307.4	322.8	335.0	10.6	3.8
- 과일 및 견과류	221.1	220.7	254.3	264.9	273.1	8.6	3.1
- 유지류	62.6	62.3	71.7	72.4	74.7	2.4	3.2
가공식품	1,110.7	1,109.1	1,255.0	1,307.9	1,353.8	42.7	3.5
- 스낵류	504.9	504.5	573.6	604.4	626.5	19.7	3.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86.3	284.4	326.2	334.8	344.9	10.9	3.0
- 편의식품	111.6	111.6	128.9	135.9	141.4	4.5	4.0
- 펫푸드	102.4	103.1	106.8	108.0	111.7	3.5	3.4
- 소스 및 향신료	57.7	57.5	66.2	69.6	72.3	2.3	3.9
- 스프레드 및 당류	31.8	31.5	35.9	37.1	38.5	1.2	3.8
- 영유아용 식품	16.0	16.5	17.4	18.1	18.5	0.6	2.2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모든(대부분) 품목에서 소폭 증가함. 주요 품목 중에서 낙농품 소비량이 연간 142.9kg으로 가장 크며, 전년 대비 0.8% 증가함
 - * 채소류 소비량은 95.9kg, 육류 58.5kg, 과일 및 견과류 52.3kg, 유지류 11.7kg 순임
- 가공식품 중 스낵류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74.9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0.3% 증가함
 - * 이어서 스낵류 소비량이 51.7kg, 펫푸드 41.6kg, 편의식품 15.0kg,, 소스 및 향신료 9.8kg, 스프레드 및 당류 8.8kg 순으로 집계됨

표 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낙농품	140.6	139.2	140.0	141.8	142.9	0.8
1114	- 채소류	95.4	93.6	94.0	94.9	95.9	1.1
신선 식품	- 육류	53.7	54.1	55.3	56.6	58.5	3.4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54.2	52.6	52.2	52.2	52.3	0.2
	- 유지류	12.3	12.1	12.1	11.6	11.7	0.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6.9	75.6	75.6	74.7	74.9	0.3
	- 스낵류	53.7	51.4	52.3	52.1	51.7	-0.8
71.77	- 펫푸드	41.6	41.1	40.8	40.9	41.6	1.7
가공	- 편의식품	14.6	14.5	14.6	14.8	15.0	1.4
식품	- 소스 및 향신료	9.7	9.5	9.6	9.7	9.8	1.0
	- 스프레드 및 당류	9.0	8.8	8.8	8.7	8.8	1.1
	- 영유아용 식품	1.2	1.2	1.2	1.2	1.3	8.3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496억 6.703만 6.000달러(한화 약 73조 105억 원)로 전년 대비 6.3%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23.2%), 미국(8.6%), 일본(8.4%) 등이 있으며, 한국은 이어 6.4%의 비중을 차지해 전체 수출국 중 4위를 기록함
 - * 對중국 수출액은 115억 2.159만 9.000달러(한화 약 16조 9.368억 워)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함
 - * 對미국 수출액은 42억 6,849만 7,000달러(한화약 6조 2,747억 원)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5개년 연평균 6.7%씩 성장함
 - * 籹일본 수춬액은 41억 4.733만 5.000달러(한화 약 6조 966억 원)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31억 6.166만 2.000달러(한화 약 4조 6.476원)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수준임

(단위: 천 달러, %)

26.1

							ᄪ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34,019,281	31,418,751	44,440,631	53,028,247	49,667,036	100.0	-6.3	9.9
1	중국	10,115,459	8,511,308	9,363,683	10,581,775	11,521,599	23.2	8.9	3.3
2	미국	3,293,758	3,111,825	3,593,223	4,048,501	4,268,497	8.6	5.4	6.7
3	일본	3,562,889	3,350,952	3,890,183	4,637,828	4,147,335	8.4	-10.6	3.9
4	한국	2,005,092	2,027,657	2,612,713	3,338,994	3,161,662	6.4	-5.3	12.1
5	베트남	1,188,071	1,230,131	2,537,885	3,163,628	3,065,967	6.2	-3.1	26.7
6	인도네시아	1,496,943	1,278,293	2,957,250	3,129,504	2,883,253	5.8	-7.9	17.8
7	뉴질랜드	1,219,754	1,248,640	1,478,067	1,595,998	1,638,704	3.3	2.7	7.7
8	태국	629,970	684,138	1,130,396	1,207,535	1,514,151	3.0	25.4	24.5
9	필리핀	856,759	557,769	1,212,180	1,828,357	1,437,326	2.9	-21.4	13.8

1.429.164

1.278.408

2.6

-105

764.415

505.334

471.345

10

아랍에미리트

표 4.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밀(18.6%)이며 이외 냉장 및 냉동 육류, 기타 유채씨, 보리 등이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 * 기타 밀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92억 4,343만 6,000달러(한화 약 13조 5,879억 원) 규모로 집계됨
 - * 냉동 쇠고기의 수출액은 45억 6,921만 3,000달러(한화 약 6조 7,167억 원)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9.2%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유채씨(6.6%), 신선 냉장 쇠고기(5.9%), 기타 보리(4.6%) 등이 있음

표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비중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34,019,281	31,418,751	44,440,631	53,028,247	49,667,036	100.0	-6.3	9.9				
1	밀(기타)	2,513,816	2,710,166	7,097,704	10,036,573	9,243,436	18.6	-7.9	38.5				
2	냉동 쇠고기	4,468,083	3,749,032	3,750,481	4,259,645	4,569,213	9.2	7.3	0.6				
3	유채씨 (기타)	669,779	786,927	2,157,781	4,828,089	3,265,910	6.6	-32.4	48.6				
4	신선 냉장 쇠고기	2,630,413	2,669,019	2,892,798	2,696,460	2,917,310	5.9	8.2	2.6				
5	보리 (기타)	726,624	913,124	1,983,793	2,323,705	2,298,406	4.6	-1.1	33.4				
6	절단한 냉동 양고기	1,418,754	1,208,444	1,518,543	1,548,001	1,373,690	2.8	-11.3	-0.8				
7	렌즈콩	211,295	372,895	536,150	766,150	1,275,633	2.6	66.5	56.8				
8	포도주 (2L 이하)	1,661,766	1,633,763	1,211,388	1,077,080	996,899	2.0	-7.4	-12.0				
9	수수 (기타)	28,484	52,435	499,808	793,880	863,263	1.7	8.7	134.6				

조제

식료품

10

821,079

782,213

712,995

675,547

847,326

1.7

25.4

8.0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163억 779만 8,000달러(한화 약 23조 9,725억 원)로 전년 대비 5.2%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14.0%의 비증을 차지하는 뉴질랜드이며, 이어서 미국(9.3%), 중국(7.4%), 태국(5.7%) 순임
 - * 뉴질랜드산 농식품 수입액은 22억 8,172만 7,000달러(한화 약 3조 3,541억 원)로 전년 대비 1.1%로 소폭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4.2%로 감소세를 보임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5억 1,325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2,245억 원)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륨은 1.7%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억 1,519만 9,000달러(한화 약 3,163억 원)로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3)('23/'22) | ('19~'23) 100.0 -5.2 전체 15.001.320 | 15.188.862 | 15.725.077 | 17.195.283 | 16.307.798 2.1 1 뉴질랜드 2.703.489 2.520.006 2.279.623 2.256.632 2.281.727 14.0 1.1 -42 2 1.619.651 1.619.941 1,529,276 1.603.457 1.513.251 9.3 -5.6 -1.7 미국 3 927.205 957 555 1.070.209 1.267.764 1.211.267 74 -45 69 중국 태국 846.957 881.607 860.684 1.053.292 927.703 5.7 -119 2.3 4 702,541 738,145 787,524 4.9 0.9 5 이탈리아 660,378 794,815 4.7 4.5 6 프랑人 583.692 577.570 723.870 742.397 732.959 -1.3 5.9 7 싱가포르 656.703 628 377 695 352 670 946 627.358 38 -65 -11 547.505 603.737 668.596 663.328 590,474 3.6 -11.0 1.9 8 네덜란드 525.031 3.5 -96 7.5 9 421,621 423.288 623.274 563.368 말레이시아 3.3 -2.5 10 영국 601.695 543.808 543.352 617.595 543.746 -12.0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조제식료품(8.8%)이며 이외 기타 빵, 냉동 돼지고기, 볶지 않은 커피, 기타 치즈, 기타 소스 등이 상위권에 위치함
 - *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14억 3,083만 달러(한화 약 2조 1,033억 원)로 집계된 것으로 조사됨
- * 기타 빵 수입액은 6억 3,297만 1,000달러(한화 약 9,305억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3.9%를 차지함
- * 뒤이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냉동 돼지고기(3.0%), 볶지 않은 커피(2.6%), 기타 치즈(2.3%) 등으로 근소한 비중 차이를 보임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ᄪᅎ	증간	<u> </u>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5,001,320	15,188,862	15,725,077	17,195,283	16,307,798	100.0	-5.2	2.1
1	조제식료품	1,459,633	1,397,965	1,556,710	1,553,649	1,430,830	8.8	-7.9	-0.5
2	빵(기타)	488,920	496,921	564,975	596,871	632,971	3.9	6.0	6.7
3	냉동 돼지고기	558,352	473,493	525,333	522,240	484,477	3.0	-7.2	-3.5
4	볶지 않은 커피	276,874	264,963	337,105	477,113	423,052	2.6	-11.3	11.2
5	치즈(기타)	343,113	302,052	326,784	341,062	379,510	2.3	11.3	2.6
6	소스(기타)	315,532	348,018	357,483	379,221	372,815	2.3	-1.7	4.3
7	대두유 추출 유박	308,941	328,383	290,027	420,618	347,228	2.1	-17.4	3.0
8	위스키류	341,401	296,169	294,301	382,073	326,121	2.0	-14.6	-1.1
9	감미료가 첨가된 물	209,842	208,685	263,448	275,472	315,095	1.9	14.4	10.7
10	포도주(2L 이하)	318,686	305,304	341,886	334,337	273,173	1.7	-18.3	-3.8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호주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9,698만 9,000달러(한화 약 2,896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95.5%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8.814만 5,000달러(한화 약 2,766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호주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비중	증감률				
구분	2019	2019 2020 2021 2022	2023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42,797	166,380	168,540	194,329	196,989	100.0	1.4	8.4
농산물	131,462	156,210	160,410	185,011	188,145	95.5	1.7	9.4
축산물	8,714	8,354	6,252	7,430	7,200	3.7	-3.1	-4.7
임산물	2,621	1,816	1,878	1,888	1,644	0.8	-12.9	-11.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으로 가공식품으로 라면, 조미김, 베이커리 제품, 인스턴트 커피, 기타 무알코올 음료 등이 있음
 - * 라면 수출액은 3,567만 달러(한화 약 3,329억 원)로 전년 대비 16.8(33.4)% 증가함
 - * 조미김 수출액은 1,846만 4,000달러(한화 약 2,766억 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8.8%로 급격히 성장함
 - * 베이커리 제품은 전년 대비 26.0% 성장한 반면, 동시기에 인스턴트 커피는 17.7% 감소함

표 9. 한국의 對호주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미조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61,222	189,350	195,166	223,824	226,479	100.0	1.2	8.9
1	라면	19,160	21,344	20,773	26,735	35,670	15.7	33.4	16.8
2	조미김	2,902	12,710	14,743	18,080	18,464	8.2	2.1	58.8
3	베이커리 제품	8,641	9,759	9,762	9,972	12,564	5.5	26.0	9.8
4	인스턴트 커피	14,685	11,441	7,712	10,545	8,677	3.8	-17.7	-12.3
5	기타 무알코올 음료	6,022	6,272	6,047	6,273	7,399	3.3	17.9	5.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호주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허가 취득	• 일부 품목 수입 시 호주 농수산임업부에 온라인으로 수입허가 신청 • 대상품목: 신선 과일 및 채소, 우유, 달걀, 육류 또는 그 밖의 동물성 제품이 함유된 식품 • 수입허가 승인 시 '수입허가번호'가 발급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3주가 소요됨	
수입신고	 호주 ICS(Integrated Cargo System)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선하증권 ② 상업송장 ③ 원산지증명서 ④ 포장명세서 ⑤ 수출·수입업자 정보 ⑥ 위생증명서(필요 시) 등 	호주
수입검사	• 물품 위험도에 따라 검사내용이 상이함 ① 감시식품: 저위험식품, 라벨검사 및 육안검사가 진행되며 전체 화물의 5%에 대해 검사 실시 ② 위험식품: 고위험식품, 일차적으로 전량 검사하며 샘플검사를 실시함, 추후 이상 없이 수입되는 사례가 누적될 경우 검사 비율이 낮아짐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호주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호주 수출 시 한-호주 FTA 또는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한-호주 FTA 활용 시 협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RCEP 활용 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호주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호주로 △양파(가공용) 및 고추류(파프리카 포함) △딸기 등 수출 시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ㅜ물급곡 안경 시 세물 시규/
수출검역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② 호주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호주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허가 취득

• 수입허가증 필요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수입허가증 발급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신선 과일 및 채소, 우유, 달걀, 육류 또는 그 밖의 동물성 제품이 함유된 식품 품목은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임
- 신선 과채류 및 식품류는 수입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나, 가공식품의 수입 시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호주 관세청 및 호주 농수산임업부에 제출함

- 수입허가증 신청은 호주 수입업체가 진행하며, 발급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 가량 소요됨 - 수입허가증은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제품 도착 전까지수입허가번호(Import Permit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신고는 호주의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진행 - 호주 ICS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우선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여 ICS에 Client로 등록해야 함 - 호주 수입업체는 회물 도착 후 하기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수입신고 〈호주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일반적으로 Form N10 사용) ⑤ 포장명세서 ⑥ 수출/수입업자 정보 ②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③ 상업송장 ⑦ 위생증명서 ④ 원산지증명서 ⑧ 수입허가서 • 호주는 위험 식품과 감시 식품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검역방법 상이 - 검역청(AQIS) 검사관리 시스템(AIMS)을 통해 전달받은 수입신고 서류 및 검역 지시사항을 토대로 육안검사 및 라벨링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시행함 - 수입식품 검사체계에 따라 녹색 신고(Green line), 적색 신고(Red line), 황색 신고(Amber line) 등으로 식품 분류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신선과일, 채소류 및 그 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식품류는 수입 허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어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의 위해관리분석 시행 〈호주 신고 분류에 따른 검사체계〉 추가적 검사 없이 통관 가능한 품목으로 수입자 혹은 대행업체가 관세 및 수입검역 (Green line)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수 있음 품목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송품장 내역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상이한 경우 등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Red line)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위장 수입물품이나 마약 및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제한 물품 또는 (Amber line) 수입금지와 같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 적색라인으로 분류되어 샘플링 또는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호주 수입업체는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 검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검역 시 제출 서류〉

- ① 검역 신고서
- ② 검사 신고서
- ③ 검사관리 시스템(AIMS)을 통해 전달받은 수입신고 서류
- ④ 수입식품 검사 신청서
- 위험 식품 중 검사를 요하는 식품과 감시 식품(Surveillance Food)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식품 분류에 따라 검역 방식이 상이함

〈식품 분류에 따른 검역 사항〉

•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들은 일차적으로 전량 검사되며, 5개의 화물이 연속적으로 통과되면 검사율 25%로, 이후 화물 20개가 연속으로 통과되면 검사율이 5%로 낮아짐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은 수입이 제한되어 100%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며 해당 제품은 재수출되거나 폐기 처리됨 위험 식품 • 수입식품관리법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시행 • 라벨링과 성분 요건의 식품 기준 규정(FSC) 준수 여부를 검사 • 필요 시, 분석 목적의 식품 샘플 채취 • 유제품, 과일·견과류·씨앗·채소, 육류, 가공식품, 해산물, 미역, 향신료와 조미료 등 총 38개의 식품 유형에 대한 검사 진행 • 위험률이 낮은 식품들은 감시 식품으로 분류되며, 감시 식품으로 분류된 화물 중 5%가 검사 대상이 됨 • 감시 식품 또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업체나 수입업체의 규정 준수 이력이 정립될 때까지 전량 검사 대상으로 지정됨 감시 식품 • 이는 화물이 5번 연속 통과되기 전까지 유지되며, 이후 검사율은 5%로 돌아감 • 라벨링 검사, 육안 검사, 미생물 검사, 화학 검사, 알레르기 항원 검사 등의 검사가 이루어짐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입검역

- 관세 및 제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및 제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 통관 시 필요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 물품 반출까지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FTA 체결현황

표 10. 호주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 중
(발효 및 서명) 태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ASEAN, 뉴질랜드,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CPTPP, PACER plus, 홍콩, 페루, 영국, 파푸아뉴기니, RCEP, TPP	EU, CEPA	GCC

^{*} 주: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호주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백미 보리 및 수수 콩 강낭콩 팥 녹두 기장 조 들깨
 - * 흙, 잡초, 볍씨 등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게 도정되어야 함
 - * 모든 곡류는 하기 사항을 PC에 부기

"Representative samples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evidence of any species of Trogoderma(whether live, dead of exuviae) in Australia's list of Trogoderma species of biosecurity concern."(대표 샘플을 조사한 결과 호주의 생물 보안 우려대상인 Trogoderma(살아있거나 죽은 개체 또는 탈피각)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과실류: 배(하동, 상주, 나주, 진주, 곡성, 고창), 감(단감), 가공된 밤, 파프리카, 포도, 참외(멜론)
 - * 수출검역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수해야 함
- 채소류 : 양파(가공용), 고추(파프리카 포함), 딸기
 - * 양파(가공용) 및 고추(파프리카 포함)는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양파(가공용): 깜부기병 무감염 증명
- 고추 : 온실에서 생산, 온실·선과장 등록
 - * 딸기는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농가·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재배지검사(실험실정밀검사), 벗초 파리 트랩조사(수출 4주전부터 수확시까지) 또는 메칠브로 마이드(MB) 훈증소독처리 등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 단, 벗초파리 트랩조사 요건으로 수출하는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
- 종자류 :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오이*, 참외*, 파, 호박, 토마토*
 - * 상기 표시된 종자는 특정 병해충 무감염 증명 등 수입 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상세 부기사항 확인 필요
 - * 모든 종자는 하기 사항을 PC에 부기

"Representative samples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vidence of any species of Trogoderma(whether live, dead or exuviae) in Australia's list of Trogoderma species of biosecurity concern."(대표 샘플을 조시한 결과 호주의 생물 보안 우려대상인 Trogoderma(살아있거나 죽은 개체 또는 탈피각)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 박과류 종자는 대상 식물별로 정밀검사(ELISA, 최소 9,400립) 후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CGMMV), Kyuri green mottle mosaic virus(KGMMV),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ZGMMV) 및 Melon necrotic spot virus(MNS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는 특정 병해충에 대해 승인된 검사법으로 무감염 증명 후 PC에 부기 또는 도착지 검사
- * 고추류(Capsaicum spp.)는 정밀검사(PCR) 후, Columnea latent viroid(CL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와 Tomoto mottle mosaic virus(ToMM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토마토는 정밀검사(PCR) 후, Pepino mosaic virus(PepMV), Columnea latent viroid(CL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Tomato apical stunt viroid(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TCDVd),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와 Tomato mottle mosaic virus(ToMM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 박과류, 고추류, 토마토 종자를 정밀검역 후 PC에 부기사항 기재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서를 발급해야 함
- * 호주 수출 재식용 종자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버섯류: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만가닥, 목이, 흰목이
 - * 동물성 부산물 및 분변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이 전혀 없는 배지에서 재배되었으며 이후에 동물성 부산물 또는 분변으로 오염되지 않았음 또는 121℃, 105kPa(15psi)의 압력에서 멸균된 배지에 재배되었으며 이후 동물 부산물이나 분변으로 오염되지 않았음(PC 부기)
- 절화류 : 장미,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 * 장미 등 증식 가능한 것은 활력 제거 처리 및 부기, MB 의무훈증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아이비
 - * 접목선인장은 수출검역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수해야 함

• 축산물

- 런천미트, 열처리 훈제육, 기타 육가공품(돈육 가공품, 계육 가공품 등), 우육이 포함된 다시다류 (Stock powder), 라면류(Stock powder), 우육가공품(Beef soup/retort), 반려동물 사료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감귤 밥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
- 채소류: 토마토,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고구마, 감자, 수삼
- 버섯류: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Agaricus spp.)

- 절화류: 백합, 국화, 카네이션, 난초, 튤립.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 양국이 합의한 수출 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호주 농업수자원부 홈페이지(https://bicon.agriculture.gov.au/)에서 품목별로 수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1004 Gourmet (호주)	
업체 유형	소매업체	
담당자명	Ms. Lee (영업 책임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어 시도하는 호주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산 식품은 주로 가공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가공식품은 한국산 면 제품이 인기이며, 그중 때운 치킨 볶음면의 인기가 상당함. 스낵류 중에서는 새우맛 칩이 수요가 높고, 즉석 떡볶이와 만두도 인기임. 한국산 냉동식품과 소스류도 판매되고 있음
- 김치는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인기였는데, 최근에는 두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호주 시장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은 고추, 시금치, 무 등 채소를 가끔 찾아볼 수 있으나 공급이 불규칙 해서 지속적인 수요는 없음. 한국산 신선 농산물은 신선함과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소비 자들 사이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임. 다만 한국산 인삼은 효능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호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호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까다로운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다수의 수입업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익숙해져 있으므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음. 한국산 식품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KAFTA)으로 수입 과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
-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시장성이 있으나 호주로 수입 및 운송 시 품질 유지에 비용이 증가됨. 이는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쳐 경쟁력이 떨어짐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호주 정부는 가공식품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해 정기적으로 수입을 취소시킴. 최근에는 가공된 다시마, 고추, 땅콩, 생선 등이 수입 취소된 사례가 발생함. 주로 선적물에서 잔류물이나 오염물이 검출되어 발생한 문제임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호주 검역검사국(BICON, 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은 식물성 원료 (plant-based)에서 유래된 면과 달걀 성분이 10% 미만 포함된 면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요구사항(Import requirement)」을 발표함
 - 2022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은 파스타, 스파게티, 국수, 소매용 면류 포장 제품 및 인스턴트 면류 제품에 모두 적용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s://legislation.gov.au/F2023L01350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https://legislation.gov.au/F2015L00396/latest/text
유해물질 잔류허용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 standards-code/legislation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기타 식품 및 음료 수입 요건 발표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 2024년 9월 18일,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는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입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농수산임업부 웹사이트에 게시함.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는 DAFF가 정의한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Import requirements by food type)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뜻하며,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의 수입 전 확인 사항, 검사 및 실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 호주는 수입식품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를 수행함. 식품은 위험식품, 감시식품, 규정 준수 계약 식품으로 구분하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검사 비중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음. 식품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식품은 유통될 수 없으며,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해야 함(단, 라벨링 문제의 경우는 수입품에 라벨을 다시 붙일 수 있음)
	· 주요 내용
	1) 대상 : 모든 기타 식품 및 음료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식품 유형별 수입 요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및 음료) (단, 뉴질랜드산 식품 및 음료는 제외됨)
	2) 대상 식품의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 요건
	① 수입 금지 대상 식품 여부 확인 필요(수입 식품 관리 규정_위험식품 목록, '23.11.9 시행)
세부 내용 통보일	② 위험 분류 카테고리: 감시식품으로 분류
으 프트	· 위험식품 및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정의
	– 위험식품: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에 따라 위험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 (ex. 카페인 제품, 치즈, 김, 견과류와 씨앗 등)
	- 검사 비율은 100%에서 시작하며, 5회 연속 통과 시 화물의 25%로 감소, 추가 20회 연속 통과 시 5%로 감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시 100%로 증가
	・규정 준수 계약 식품: 식품 수입 규정 준수 계약(Food Import Compliance Agreement)에 따라 수입된 식품
	- 식품 안전 규정 시스템에 따라 관린되며, 검사를 위해 IFIS에 회부되지 않음
	• BICON은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허가, 수입 조건, 보완 서류, 방역 필요성, 수입 허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20,000개 이상의 동물, 식물, 광물 및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수입 요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BICON을 통해 수입요건 확인 및 준수가 필요함. BICON 수입 허가가 필요한 식품의 수입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됨.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신청서가 검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인없이 수입되는 상품은 반품 또는 폐기됨

통보일	2024년 9월 18일
시행일	2024년 9월 18일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153&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page=1

• 이매패류 개정 수입 요건 적용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호주 농수산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비소매용이매패류 제품의 수입 요건 개정 조개(Clam), 홍합, 새조개과, 굴, 피피(pipis), 가리비 제품이 해당되며, 조리, 저온 살균, 가열, 건조, 양념, 훈제 공정을 거친 이매패류를 포함함 * 개정된 수입 요건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부터 비소매용 이매패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대장균 검사 면제 가능 호주 농수산업부는 호주로 수입되는 이매패류 제품이 포함된 대장균(E.coli) 검사를 실시하며, 대장균 검사는 로트당 최소 5개 샘플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됨(*각 샘플은 대장균 수치 2.3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샘플이라도 수치 7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샘플의 로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 금번 법령된 개정된 수입 요건에 따라, 이매패류 제품 중 열처리 가공을 포함한 추가적인 살균적 가공을 거친 뒤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대장균(E.coli) 검사가 면제될 수 있음 이 외에도 호주로 이매패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호주 농수산업부의 수입 요건 중수 필요 호주 농수산업부는 굴을 제외한 한국산 이매패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레토르트 처리되거나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 등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대장균 외에도 수입 이매패류 제품에 포함된 도모이산, 마비성패류독소(PSP),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잔류한계 기준치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시행됨
통보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출처	https://www.kfishinfo.co.kr/kor/view.do?no=141&idx=50012&view=view&pageIndex=1#none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호주 토종 벌꿀 식품 기준 개정"이 2024년 7월 22일 공표됨.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법 개정을 통해 호주 자생 무침벌(Tetragonula 및 Austroplebeia 속)이 생산한 벌꿀을 표준화된 식품으로 인정함. 본 규정은 공표일과 동일한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
- "호주 유전자 변형 식품 정의 개정"이 2024년 7월 29일 공표됨. 호주 뉴질랜드 식품규격청 규약에서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및 '유전자 기술'의 기존 정의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대체함. 본 규정은 2025년 중반 시행될 예정임.
- "호주 D-알룰로스 식품 기준 개정"이 2024년 8월 19일 공표됨.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코드 개정을 통해 마이크로박테리움 폴리오룸 효소 변환 방식으로 생산된 D-알룰로스를 신식품으로 허용함. 본 규정은 2024년 10월 말 시행됨. 또한, 삼양사(Samyang Corporation)에 대해 15 개월 독점기간이 적용됨
- "호주 가공 보조제 2-메틸옥솔란 허용 개정"이 2024년 8월 30일 공표됨.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 규정을 개정하여 2-메틸옥솔란(2-MeOx)을 식품 가공 보조제로 허용함. 본 규정은 2024년 12월 시행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https://www.foodstandards.gov.au/business/ labelling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제품명식품 성알레르공급업	분 •유통기한 •경고 문구 표시
	표기언어	라벨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제품명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또는 식품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할 것
		제품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원료명은 일반명이나 원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형태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름으로 할 것
	식품성분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포함해 함량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원료 정보를 나열해야 함
		식품첨가물(비타민, 미네랄 포함)을 표시해야 하며, 효소와 향미료는 구체적 성분 명 없이 '효소', '향미료 및 기타'로 표기
		식품 원료의 실제 함량 또는 최소 함량을 퍼센트 형태로 제공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식품성분	알레르기 필수 표기항목(11가지) - 땅콩, 견과류(아몬드, 브라질넛,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우유, 달걀, 깨, 어류, 갑각류, 대두, 루핀(lupin), 밀(글루텐 함유 또는 미함유)/호밀/ 보리/귀리/이러한 곡물에서 교배된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는 종 또는 이러한 식품에서 유래한 제품, 아황산염 첨가물(10mg/kg)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경우, 식품기준코드(ANZFSC) 표 9-3에 규정된 필수 표기사항(Mandatory declarations)에 따른 영문명 사용
		라벨링상 원재료명 부분에 기재해야하며, 다른 원재료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함 (예) egg yolk, almonds, garlic, parmesan cheese powder (milk), sea salt, wheat flour, mustard powder, thickener (1412), flavour (wheat maltodextrin, sesame oil)
	공급업체 정보	호주 또는 뉴질랜드 공급업체(제조사, 포장업체, 벤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필수적으로 표기할 것
		주소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의 주소로 작성해야 하며, 사서함 주소는 사용 불가함

	보관조건 및 사용방법	제품의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법 또는 보관조건 및 사용방법을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Best-Before' 또는 'Use-By'로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일, 월, 연도 순으로 표기
		건강강조표시가 아닌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정보를 표기해야 함
	영양 정보	제품의 평균 1회 섭취량(g 또는 mL)과 제품의 섭취 횟수를 표기해야 함(kJ 또는 kcal)
		트랜스 지방, 다중 및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원산지	육류, 청과, 빵과 같은 주 식품(Priority Food)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함 - Grown in(청과류 등의 신선식품) - Product of(주요 원료 원산지 및 생산 공정 국가) - Made in(가공식품 생산국) - Packed in(제품 포장 국가)
라벨 표기사항		조미료, 제과류, 스낵류, 주류 등 기호식품(Non-Priority Food)은 'Made In'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113 (7Ю(<u>드</u>)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호주산 재료 비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와 원산국을 나타내는 글 상자를 이용해야 함. 혹은, 글 상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와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특정 국가에서 재배 또는 생산, 제조, 포장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표기하는 경우는 불법임
		제품이 생산된 나라를 표시해야 하며 식품에 호주산 재료가 함유된 경우, 그 비율을 명시하고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함
	경고 문구 표시	제품의 섭취 시 건강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등 경고 표기 필수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작성할 것
		특정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과잉 섭취가 완화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권고문 필요
	기타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이나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질병, 장애 또는 특정 상태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혹은 완화의 의미가 있는 문구의 표기는 불가능함
		로트번호(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Standard 1.2.2 참고)

^{*}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호주 국경경비대(ABF)

• 홍삼음료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고려 홍삼정 365 스틱		
원재료명	고려홍삼 추출물, 옥수수 시럽, 혼합 야채 추		
내용량	1000g(10g * 100스틱) / 상자		
수입업체	네이처 가든 오스트레일리아 PTY LTD 유닛 1, 17 웨더릴 스트리트 사우스 리드콤	네이처 가든 오스트레일리아 PTY LTD 유닛 1, 17 웨더릴 스트리트 사우스 리드콤 NSW 2141 오스트레일리아	
제조업체	대동고려삼(주)		
유통기한	상자에 인쇄(MY/MM/DD)		
사용법	매일 1스틱 복용. 밀 포함. 콩과 우유 성분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제조.		
	1회 제공량: 1스틱 (10g) / 총 제공량: 1000g (100스틱)		
	1회 제공량 당 함량 (10g (1스틱) 27kcal)		
	~~~~~~~~~~~~~~~~~~~~~~~~~~~~~~~~~~~~~	장 섭취량*	
		6g (2%)	
영양성분표시	당류	2g	
	단백질	0g (0%)	
	총 지방	0g (0%)	
	나트륨	0mg (0%)	
	*% 일일 권장 섭취량: 일일 권장 섭취량 비율은 2000 칼로리 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의 칼로리 필요량에 따라 일일 섭취량은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 컵우동

###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농심 우동						
원재료명	면: 밀가루, 타피오카 전분, 밀, 글루텐, 식품 산도조절제 (260, 270, 331, 296, 330, 355), 소금, 식물성 기름 (항산화제 (3078) 포함), 포도당, 감미료 (420), 말토덱스트린,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대두), 증점제 (414), 유화제 (322 (대두)). 수프 베이스: 간장, 생선,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대두, 밀), 쌀가루, 포도당, 소금, 설탕, 효모 추출물, 글리신, 향미 증진제 (631, 627, 364), 말토덱스트린, 버섯, 감미료 (420), 옥수수 시럽, 향료, 쌀 와인, 대두, 유화제 (322 (대두)). 플레이크: 밀가루, 설탕, 생선, 감미료 (420), 양파, 식물성 기름, 전분 (밀, 감자), 무기염 (501, 500, 339), 건조 해초, 건조 홍고추, 소금, 말토덱스트린, 오징어, 후추.						
제조업체	농심 주식회사, 112, 서울특별	농심 주식회사, 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보관 조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알레르기 정보	밀, 대두, 생선 함유. 계란, 땅콩, 우유, 견과류, 참깨를 포함한 제품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영양 정보						
		100g 기준 평균량					
	에너지	1,750kJ	630kJ				
	단백질	9.1g	3.3g				
	지방 총량	0.8g	0.3g				
영양성분표시	포장당 제공량: 1 / 1회 제공량: 276g						
		1회 제공량 기준 평균량	100g 기준 평균량				
	포화지방	1g 미만	1g 미만				
	탄수화물	92.0g	33.3g				
	당류	2.5g	1g 미만				
	나트륨	1,820mg	660mg				

### ● 인증

### [필수 인증]

- 호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 호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호주 검역청에서 관리하는 검역을 받아야 하며, 호주식품표준 지침(ANZFS)를 준수해야 함.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수입 식품에 모두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됨

인증명	• 호주 수입식품안전관리 제도	
인증기관	· DAFF(호주 농수산임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Government
강제유무	·필수	Fisheries and Ferestry
등록 대상	• 호주 및 뉴질랜드에 식품 수출(예정) 업체	
적용품목	곡물/청과, 고기, 계란 및 생선류      식용류, 유제품, 설탕 및 꿀      무알콜 음료/주류      특수 목적 식품      기타 음식(식초, 소금, 껌 등) 등	
소요기간	· 별도 소요 기간 없음	
유효기간	・무기한	

####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호주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18건으로 집계됨. 2023년 호주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6건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표 13. 2022~24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사이트 명칭	사이트 명칭	사이트 명칭	URL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6	4	4	14		
위생	0	0	2	2		
서류미비	1	0	0	1		
잔류농약 검출	0	0	0	0		
기타	0	1	0	1		
합계	7	5	6	18		

### ▶ 2024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표 14 2024년 원변 하구사 토과거브 사례 거스

• 2024년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총 6건으로, 성분 부적합 문제 4건, 위생 문제가 2건 발생함

교 14. 2024년 월달 한국년 중단기구 시네 단구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1	0	0	1	0	1	0	0	0	0	1	4
위생	0	0	0	1	1	0	0	0	0	0	0	0	2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1	0	1	2	0	1	0	0	0	0	1	6

###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금지식물고사리함유	2
성분	요오드기준치초과 검출	1
	징크옥사이드검출	1
기타	대장균 허용치 초과 검출	2
	6	

###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b>-110</b>	과실류	1	16.7	징크옥사이드 검출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2	33.3	고사리 검출
	소 계		50.0	
AIID	연체동물	2	33.3	대장균 초과 검출
수산물	해조류	1	16.7	요오드 초과 검출
소 계		3	50.0	
총합계		6	100.0	

# 04 수출 애로사항

### ● 이매패류 제품 수출 시 수입 요건의 업데이트

해당국가	호주
관련품목	이매패류
유형*	SPS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만 대장균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수입 요건이 변경됨
	• 이매패류는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전 모든 생물보안요건(BICON)을 충족해야 함
	• 한국산 굴의 경우 호주 수출이 제한됨
주요 내용	• 레토르트 제품 및 상온 보관 가능 제품은 인증 요건에서 제외됨
네 <del>ㅎ</del>	・수입신고서(FID) 제출 시 수출국 정부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호주와 정부 인증서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MOF)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에서 인증을 관할함
	• 2023년 11월 9일부터 이매패류에 대한 강화된 수입 검역 조치가 시행됨
애로 사항	• 호주로 이매패류 수출 시 강화된 검역 조치로 인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필요 서류가 증가하여 수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 bivalve-molluscs#korea-republic-of

### ▶ 호주 일반 식품 및 음료 수입 규정

해당국가	호주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ul> <li>수입 전 모든 생물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BICON 시스템을 통해 수입 조건을 확인해야 함</li> <li>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코드 Standard 1.1.1-10(5)에 명시된 금지 식품은 수입이 불가함</li> <li>Schedule 23에 명시된 금지 식물 및 균류는 수입이 제한됨</li> <li>코냑 성분이 포함된 미니젤리컵과 같이 관세법(Prohibited Imports) 규정에 의해 금지된 품목은 수입이 불가함</li> <li>비전통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은 시장 출시 전 식품안전성 승인이 필요함</li> <li>전체 수입 물량의 5% 비율로 육안 검사 및 라벨 평가를 위한 검사가 실시됨</li> <li>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코드 Chapter 1, 2 및 원산지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함</li> </ul>
애로 사항	• 생물보안 통관 이후에도 IFIS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이 제한되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 호주 All other food and beverages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all- other-food-bevs

### ♦ 호주-뉴질랜드 간 조제분유 공동 표준 탈퇴

해당국가	호주
관련품목	조제분유
유형*	기타
주요 내용	<ul> <li>2024년 8월 5일, 뉴질랜드가 호주-뉴질랜드 유아용 조제분유 공동 표준에서 탈퇴를 결정함</li> <li>호주의 새로운 표준은 특수 조제분유의 슈퍼마켓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이나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li> <li>호주 표준은 조제분유 홍보를 제한하고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장에 대한 표시를 제한함</li> <li>공보일로부터 5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되며 현행 코드 및 개정 코드 모두 사용이 가능함</li> <li>뉴질랜드는 향후 5년간 자체적인 유아용 조제분유 표준을 구축할 계획임</li> <li>뉴질랜드는 건강 및 영양 주장 관련 부분에 대해 호주보다 폭넓은 허용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li> <li>대상 품목: 호주와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식품</li> </ul>
애로 사항	• 기존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통된 기준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뉴질랜드가 공동 표준을 탈퇴하여 혼란이 있음
기타	※ 뉴질랜드 영유아용 조제분유 탈퇴 관련(P1028)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proposals/P1028

##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 (1) 알콜음료

####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호주 알콜음료 라벨링 규정 관련 주의사항
- 주류 중간번들 6개 비닐 쉬링크 팩 사용 가능 여부
- 알루미늄 캔 전면 개봉형 뚜껑 사용 가능 여부

#### ♪ 제품 조사 결과

- 호주 알콜음료 라벨링 규정
  - 호주 알콜음료 라벨링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에서 규제
  - 라벨링 규정은 일반의무규정과 특별의무규정으로 구분

#### • 일반의무규정

- ① 제품명/설명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모든 알콜음료 라벨에는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함
  - 제품명이 없는 경우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충분한 정보의 설명을 표기해야 함

#### ② 로트번호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모든 알콜음료에는 포장에 고유한 '로트' 또는 '배치' 식별자가 있어야 함
- 로트 식별은 제품 추적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특히 특정 생산 배치를 회수해야 할 경우에 중요함
- 일반적으로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바코드 근처에 배치됨
- ③ 공급자 상호와 주소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알콜음료 라벨에는 생산 또는 유통 책임이 있는 업체의 상호와 물리적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주소는 거리 번호, 거리명, 교외, 도시 및 주/테리토리를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여야 함
- 우편 주소(예: PO Box)는 허용되지 않음

#### ④ 원재료표기

- 조항: Standard 1.2.4
- 일반적으로 알콜음료 라벨에 원재료 목록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
- 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반드시 명시해야 함

#### ⑤ 알레르기경고

- 의무조항: Standard 1.2.3
-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된 알콜음료는 라벨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2021년 2월 25일부터 발효된 식품표준규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함
- 2024년 2월 25일까지 새로운 알레르기 라벨링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전환 기간이 있음
- 면제: 보리, 호밀, 귀리 또는 밀에서 증류된 증류주는 라벨에 이러한 알레르게을 표시할 필요 없음

#### ⑥ 날짜표기

- 옵션: Standard 1.2.5
- 알콜음료 라벨에 '유통기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 단,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 미만인 경우 이 날짜 표시가 의무화됨

#### ⑦ 보관방법

- 옵션: Standard 1.2.6
- 알콜음료 라벨에 보관 조건 표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 '유통기한'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보관 조건에서만 그 날짜까지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⑧ 영양성분 건강관련성분표

- 자발적: Standard 1.2.7
- 영양 함량 표시는 특정 성분의 존재 또는 부재에 관한 진술(예: "무글루테", "저칼로리" 등)
- 1.15% ABV 이상의 알콜음료에 대한 영양 또는 건강 표시는 금지됨
- 단. 에너지 함량(칼로리), 탄수화물, 글루텐 함량과 관련된 표시에 대한 예외 존재

#### ⑨ 제조국가

- 의무조항: ACCC 요구사항
- 알콜음료는 비우선 식품으로 분류되며 라벨에 원산지 표시는 의무 요구사항임

#### • 특별의무규정

#### ① 용량표기

- 규정: 국가 상거래 계량 규정(National Trade Measurement Regulations)
- 용량 표시는 병 안의 총 액체량을 지정하는 필수 라벨링 요구사항임
- 최소 글자 높이, 위치, 측정 단위, 명확한 표시 등의 관련 규칙 준수 필요
- 표준 750ml 병의 경우 용량 표시의 최소 글자 높이는 3.3mm여야 함

#### ② 제품내 알콜 있음 표기

- 규정: Standard 2.7.1-3
- 알콜 함량 표시는 음료 내 알콜 농도의 중요한 지표
- 0.5% 이상의 알콜을 함유한 식품에는 알콜 표시가 의무화됨
- 1.15% 이상의 알콜을 함유한 경우 mL/100g, mL/100mL 또는 알콜 용량 비율(예: '13.5% alc/vol 또는 ABV')로 표시해야 함
- 알콜 함량 표시는 +/- 0.3% ABV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해야 함

### ③ 스탠다드 드링크용량 표기의무

- 규정: Standard 2.7.1-4
- "스탠다드 드링크"는 음료에 포함된 순수 알콜의 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단위
- 호주에서는 20°C에서 측정된 10g의 에탄올을 함유한 음료량으로 정의됨
- 20°C에서 측정한 알콜 용량(ABV)이 0.5%를 초과하는 모든 알콜음료는 용기에 포함된 스탠다드 드링크 수를 표시해야 함
- 계산식: 스탠다드 드링크 수 = 용기 용량(리터) x % 알콜/Vol(mL/100mL) x 0.789(에타올의 비중)

#### ④ 임산부경고라벨

- 규정: Standard 2.7.1-8
- 1.15% 이상의 알콜을 함유한 포장된 알콜음료에는 임신 경고 라벨 표시가 의무화됨
- 임신 경고 라벨은 2020년 7월 31일에 공표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완전한 준수를 위한 3년의 전환 기간 제공
- 크기 요구사항: 용량에 따라 다른 크기 요구사항이 적용됨(200ml 이하, 201-800ml, 801ml 초과)
- 색상 요구사항: 특정 색상 요구사항에 따라 임신 경고 마크를 표시해야 함

#### • 주류 포장 방법 조사

- 호주에서는 다양한 주류 포장 방식 사용 중
-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을 줄이려는 환경 보호 움직임이 활발함
- 시장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포장 방식이 확인됨:
- ① 비닐 쉬링크 팩 사용 사례
  - 전통적인 유명 제품들(VB, 칼톤 드라이, 멜번 비터 등)이 병제품을 중심으로 비닐 쉬링크팩 사용
  - 주류회사 관계자들은 종이포장으로 변경 추세라고 언급
- ② 종이팩 번들 사용 사례
  - 최근 유행하는 방식으로 환경 친화적 이미지 부각
  - 몬스타 레몬소주, 기린 효케츠 등이 종이재질 번들 사용 중
- ③ 플라스틱 홀더 사용 사례
  - 6개 또는 4개 캔 번들 방식으로 재사용 가능
  -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

#### • 알루미늄 캔 전면 개방형 뚜껑 사용 현황

- 과거 일부 맥주에서 사용되었으나 실제 소비자들이 장점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점점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관련 정부 규제는 없음
- 호주 주류 포장 업체에서는 여전히 알루미늄 캔용 풀 어퍼처 리드 재료를 판매 중
- 일본 사케류는 유리컵 위에 알루미늄 리드를 씌워 판매하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음

#### • 호주 포장 관련 최신 규정 동향

- 호주 정부는 2024년 10월 28일까지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포장 규정을 연구함
- 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 ② 포장 순환성에 대한 의무적 국가 표준 도입
- ③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구현
- ④ 재활용 가능성 표준 의무화
- ⑤ 재활용 함량 목표 설정

# ♪ 자문 결론

- 호주 정부의 환경 보호 정책과 ESG 경영 영향으로 재활용이 힘든 비닐포장에서 리사이클 가능한 종이 등의 재질로 자발적 방향 전환이 진행 중임
- 2024년 10월 28일 이후 새로운 포장 규정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슈퍼마켓의 비닐백 사용금지와 같은 정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전면 개방형 뚜껑은 많은 양의 액체를 빠르게 배출하기 위한 용도라면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해 점차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관련 정부 규제는 확인되지 않음
- 호주 시장은 보수적이지만 한번 변화가 시작되면 확실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시장 추세에 맞추 포장 방식 도입이 권장됨

# (2) 콩국물

#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호주 콩국물 제품 라벨링 규정 관련 주의사항
- 호주 수입식품 규정에 따른 콩(대두) 알레르기 표시 요건
- 제품 영양성분표시 및 보관방법 표기 요건

# ♪ 제품 조사 결과

- 호주 식품 라벨링 규정 개요
  - 호주 식품 라벨링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에서 규제함
  - 주요 규제 기관 및 관련 법규:
  - ①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https://www.accc.gov.au)
  - ② 호주 농업·수자원부(DAW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농업, 축산 및 식품 – 수입 규정(Agriculture, Farming and Food – Importing of Goods)
  - ③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Code, FSC)

- ④ 호주 국가측정원(NMI,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제품 계량 규정(Product Trade Measurement)
- ⑤ 알레르기 정보국(Allergen Bureau): VITAL 프로그램(Voluntary Incidental Trace Allergen Labelling Program)

### •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① 제품명/설명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명칭이나 설명 필수
  - 예: "Soy Milk"(두유), "Soymilk"(두유), "Korean Soy Milk"(한국식 두유) 등
  - 영어명과 설명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함
- ② 로트번호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제품 추적을 위한 고유 식별자로 필수 표기
  - 일반적으로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바코드 근처에 배치
- ③ 공급자 상호와 주소
  - 의무조항: Standard 1.2.2-2
  - 생산회사, 주소와 호주내 수입·유통사의 주소, 연락처 등 표기
  - 호주 또는 뉴질랜드 내의 사업장 주소 필수(우편함 주소 불가)
- ④ 원재료표기
  - 조항: Standard 1.2.4
  - 원재료를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
  - 고형분 함량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비율(%) 표시 권장
- ⑤ 알레르기경고
  - 의무조항: Standard 1.2.3
  - 콩국물의 경우 주요 원료인 '콩(대두)'은 필수 알레르기 표기 대상
  - "Contains Soybeans" 또는 "Contains Soy"로 명확히 표기
  - 라벨에 알레르기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별도 표시

#### ⑥ 유통기한 표기

- 조항: Standard 1.2.5
- "Best Before" 형식으로 dd/mm/yyyy(날짜/월/년) 순으로 표기 권장
- 유통기한이 2년 미만인 제품은 날짜 표시 의무

### ⑦ 보관방법

- 조항: Standard 1.2.6
- 특정 보관 조건이 제품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함
-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침 표시 필요
- 콩국물 제품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보관방법 표기가 권장:
  - (1) 개봉 전 보관방법 (예: "Store in a cool, dry place.")
  - (2) 개봉 후 보관방법 (예: "Once opened, refrigerate at 1-4°C.")
  - (3) 개봉 후 소비기한 (예: "Consume within 3-5 days after opening.")

### ⑧ 영양성분표

- 조항: Standard 1.2.7
- 호주는 kI(Cal) 단위 사용 필수
- 일반적 형식: "NUTRITION INFORMATION" 제목 아래 표 형식으로 표기
-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100ml당 함량 동시 표기
- 에너지,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탄수화물(당류), 나트륚 등 필수 표기

#### ⑨ 제조국가

- 의무조항: ACCC 요구사항
- "Product of Korea" 또는 "Made in Korea" 등으로 명확히 표기
- 박스 안에 넣어 강조해야 함(제재가 강력한 항목)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벌금: 기업 \$1.1million, 개인 \$220.000

#### ① 용량표시

- 규정: 국가 상거래 계량 규정(National Trade Measurement Regulations)
- 제품명과 같은 방향으로 용량 표기
- 액체의 경우 ml 또는 L 단위 사용

#### • 호주 콩(대두) 알레르기 표시 요건

- 콩(대두)은 호주 식품표준코드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분류됨
-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 명확한 알레르기 표시 필수:
  - ① 탈지, 중화, 표백 및 탈취 처리된 대두유
  - ② 토코페롤이나 식물성스테롤 형태의 대두 파생물
- 필수 표기 형태: "ALLERGEN ADVICE: Contains Soybeans" 또는 "CONTAINS SOY"
- 원재료 목록과 별도로 눈에 띄는 곳에 표기 권장

### • 호주 현지 생산 두유 제품 특징:

- 일반적으로 "Soy Milk"라는 명칭 사용
- 칼슘 강화 제품이 많으며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 유기농(Organic) 인증 제품 다수
- 대부분 1L 용량의 테트라팩 포장 사용

#### • 호주 수입 두유/콩국물 제품의 경우:

- 알레르기 표시(Contains Sov) 명확히 표기
- 원산지 표시 박스 형태로 강조
- 원재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경우 많음

#### • 호주의 모든 수입식품은 아래 두 가지 요건 충족 필수:

- ① 2015년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에 따른 생물안전(biosecurity) 요건
- ② 1992년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검사제도(IFIS,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에 따라 검사
- 콩국물과 같은 식물성 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됨

#### • 호주 관세사 자문 결과

- 제품 성분, 원재료 등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문제점 없음
- 단, 콩이 들어간 식품은 알레르기 관련 표기 필수
- 원재료에 SOY 또는 SOYBEAN 있음을 표기해야 함
- 비타민과 미네랄은 호주 내 일부 두유제품처럼 소량이 들어가고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는 문제되지 않음

- 영양성분 및 비타민·미네랄 표시 규정
  - 호주 식품표준에 따른 영양소 기준값
  - 비타민 A: 성인 남성 하루 900mcg, 여성 700mcg
  - 비타민 C: 성인 남성 하루 90mg, 여성 75mg
  - 칼슘: 성인(19-50세) 하루 1000mg
- 철부: 성인 남성 하루 8mg, 여성 18mg
- 영양성분표 작성 시 아래 항목 고려:
  - 에너지: 반드시 kJ 단위로 표기(Cal은 괄호 안에 병기 가능)
  - 1회 제공량(Serving size) 명확히 표기
  - 100ml당 함량 표기
  -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비율(% Daily Intake) 표기 권장
  - 영양 강조표시(예: "Good source of Calcium")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 자문 결론

- 콩국물 제품의 호주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알레르기 경고 표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SOY' 또는 'SOYBEANS'에 대한 알레르기 경고를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함
-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박스 형태로 강조하여 표기해야 하며, 이 부분은 ACCC에서 엄격하게 관리 하므로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영양성분표는 호주 규정에 맞게 kJ 단위를 사용하고, 1회 제공량 및 100ml당 함량을 명확히 표기 해야 함
- 콩국물 제품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할 경우, 호주 내 유통 중인 두유 제품과 같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에 따라 초기 수입 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수출 시소량으로 시험 통관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장함

## (3) 건강보조제

###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관세윸 등 통관 검역 시 주의사항
- 수입 시 검사항목 등
- 회사 등록 방법

### ♪ 제품 조사 결과

- 호주 법인 설립 절차
  - ① 회사명 결정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지 확인 후 회사명 결정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검색 가능
    - 일부 단어(building society, trust, university, chamber of commerce 등)는 호주 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용 불가
  - ② 주주 및 이사 선정
    - 최소 1인 이상의 주주와 1인 이상의 등기이사가 필요
    - 등기이사 중 한 명은 반드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함
  - ③ 등록 주소지 확보
    - 호주 내에 등록 주소지가 필요
  - ④ 등록 신청서 제출
    - A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 신청서(ASIC Form 201)를 제출
    - 자본금은 A\$1 이상
  - ⑤ 회사 등록증 발급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등록증을 발급
  - ⑥ ABN 신청
    - 호주 국세청(ATO)에 호주 사업자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신청
  - ⑦ 은행 계좌 개설
    -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내에 설립이 완료됨
- 설립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A\$700~\$1.500 정도 소요
- 회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 가능
- 수입과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을 호주 세무서, 은행 등의 서류에 명시

### • 외국회사로 등록하는 방법

- ① 회사명 확인
  - 호주 내 기존 회사와 동일한 이름이 없는지 확인
  - 이름 예약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Form 410(Application for reservation of a name) 으로 신청 가능
- ② Form 402 작성
  - 외국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Form 402) 작성
  - 제안된 회사와 운영 방법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
- ③ 증빙 서류 준비
  - 법인 설립 또는 등록 증명서의 인증 사본
  - 법인 정관의 인증 사본
  - 현지 대리인 임명 각서 또는 위임장
  - 특정 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각서
- ④ 수수료와 함께 Form 402 제출
  - 외국 회사 이사 또는 비서, 현지 대리인이 서명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제출
- 등록된 외국 회사의 지속적인 의무
  - 등록된 사무소 유지
  - 회사 이름 표시
  - 호주 등록 기관 번호(ARBN) 올바르게 표시
  - 연간 수익률 보고
  - 재무제표 제출(최소 연 1회)

#### • 전성분 검토

- 본 제품에는 총 49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38가지 산야초 추출 발효액 (49.6%), 농축단풍나무수액(25.0%), 황매실액(10.0%), 쌀올리고당(5.0%), 그리고 맥문동, 진피, 오미자, 공사인, 생강, 인삼 등의 한약재 원료(10.4%)가 함유됨
- 주요 성분 중 일부는 호주 수입/사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망초(Canadian fleabane), 쇠뜨기(Horsetail), 음나무(Kalopanax pictus), 참취(Wild aster),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마타리(Patrinia scabiosaefolia), 개통쑥(Sweet wormwood), 오갈피나무 (Five-leaf aralia),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오미자(Fructus Schisandrae Chinensis), 공사인 (Amomum xanthioides seeds) 등은 호주에서 식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지 않음
- 일반식품으로는 수입 유통이 불가하며 건강보조식품으로 호주 식약청(TGA)에 등록 해야함

#### • 유사제품 시장조사

- 호주 내 유사한 다이어트 디톡스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호주 식약청(TGA)의 AUST-L 번호를 득하여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조제로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Dietary Supplement"로 표기되어 있으며, TGA 등록번호를 표시함

### • 통관절차

- ① 수입허가 확인
  - 호주 검역검사국(BICON, 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수입 조건을 확인
- ② 필요 서류 준비:
  - 수입허가서
  - 국내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Health Certificates)
  - 제품 성분표, 제조 공정도, 제품 사진
  -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 ③ 검역 및 검사
  - 호주 도착 후 농림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호주식품검역검사청(AOIS)의 검역 및 검사 진행

### ④ 제품 운송:

- 항공운송: 1-2일에서 2주 소요
- 해상운송: 한국-호주 간 최소 3주 소요
- 컨테이너 전체 이용 또는 다른 제품과 혼적 여부 결정 필요
- ⑤ 통관 절차
  - 서류 및 검역 절차 완료 후 호주 세관(ABF, Australian Border Force)에서 최종 통관 진행
- ⑥ 한-호 FTA 활용
  - 한국-호주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관세율 0%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음

#### • 수입 요건

- 호주 수입식품에 대한 법령으로는 1992년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및 2015년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을 따름
- 한약재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제는 일반식품이 아닌 호주 식약청(TGA)에 등록된 건강보조식품 으로 수입해야 함
- BICON 시스템을 통해 수입 가능 여부와 필요 조건 확인 필요
- 호주-한국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한국에서 작성하면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음

### • 라벨링 요건

- 호주 식품표준에 근거한 라벨링 규칙(FSANZ)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기해야 함:
- ① 제품명(Name of food)
- ② 제조번호(Lot Identification)
- ③ 생산자 및 수입자 정보(Name and address of the supplier)
- ④ 주의사항 및 경고문(Advisory statements, warning statements and declarations)
- ⑤ 원재료 목록(A statement of ingredients)
- ⑥ 유통기한(Date marking information)
- ⑦ 보관 및 사용방법(Storage conditions and directions for use)
- 8 영양 및 건강 관련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nutrition, health and related claims)
- ⑨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 ⑩ 가독성 요건(Legibility Requirements)

- ① 특성 성분 및 구성요소 정보(Information about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 ⑫ 유전자변형/방사선 조사 관련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foods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Irradiation)
- ③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 원산지 표시는 박스 안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함
- ⑤ 순중량(Net Weight)

### ♪ 자문 결론

- 호주 내 법인 설립은 일반법인(Pty Ltd)과 외국회사 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외국회사로의 호주 내 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지속적인 의무사항이 많아 비용 발생이 큼.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호주 내 수입자 또는 현지 회계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법인(Pty Ltd)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권장함
- 본 제품은 다양한 한약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호주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가 불가하며, 반드시 건강보조식품으로 호주 식약청(TGA)에 등록해야 함
- 호주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은 모두 호주 식약청(TGA)의 AUST-L 번호를 득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호주 식약청(TGA) 등록을 받은 후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공식적인 수입 유통 방법임
- 수입통관은 현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모든 서류(수입허가서, 검역증, 성분표, 원산지증명서 등)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통관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할 수 있음
- 일부 성분은 호주에서 식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지 않아 수입 시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과 호주는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한눈에 보이는 **호주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